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cense & Training System of Security Agent in Japan

조용철* · 김순석**

<목 차>

I. 서론	IV.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
II. 한-일 민간경비산업의 상호 비교	제도의 시사점
III.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 분석	V. 결론

<요 약>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주제어 : 일본 민간경비원, 경비원 교육훈련, 자격증제도, 경비업무, 일본 경비업법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경찰학박사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외래교수, 박사과정 수료

I. 서 론

오늘날 갈수록 전문화,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민간경비 자격증제도와 이에 따른 교육훈련제도는 해당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큐리티제도가 갖는 의의를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후반 시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제도는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시큐리티 관련 자격증을 이미 1980년대부터 민간경비산업 현장에 보급하였으며, 오늘날 민간경비산업 발전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시큐리티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가공안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비업무 검정시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기능을 강화한 덕분이라 평가된다(조용철, 2007:133-134).

최근에는 경비업자에 대한 경찰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일련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경비원의 업무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켜, 시큐리티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바, 특히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는 일본 경비업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원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책임자의 선임과 자격증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와 유사한 이 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비인력의 교육훈련 확대와 시큐리티 산업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비교대상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을 상호 비교해보고,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의 기본적인 개요를 바탕으로, 특히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경비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연구의 특성상 일반경비업무와 구분되는 기계경비업무 관련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제도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I. 한-일 민간경비산업의 상호 비교

1. 경비업체 및 경비원

1) 한국

우리나라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 수는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2,834개 업체 135,400명의 민간경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20년 전인 1988년에 비하여 경비업체는 20.8배, 경비원수는 6.9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표 2-1>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증가추이

(단위 : 개/명)

년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경비업체수	10	11	13	19	27	31	44	55	78	106	136	197
경비원수	4,991	5,169	5,632	5,819	6,396	7,811	8,631	8,709	12,625	16,098	19,456	21,990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비업체수	252	349	408	499	682	833	1,020	1,151	1,375	1,707	1,882	1,929
경비원수	25,559	30,941	34,541	36,320	37,607	40,109	43,611	62,419	52,343	71,481	81,618	97,117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비업체수	2,051	2,163	2,322	2,515	2,671	2,834						
경비원수	107,963	104,872	105,697	122,327	127,620	135,400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2) 일본

일본의 시큐리티시장은 2007년 말 기준으로 8,996개의 민간경비업체가 활동 중인데, 1990년대 들어와서 최근까지 연간 민간경비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2년에 비해 11.6배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69개업체가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028명 증가한 494,110명으로 1990년대 들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2년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¹⁾

<표 2-2> 일본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증가추이

(단위: 개/명)

연도	1972	1982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업체수 (배율)	775 (100)	3,546 (458)	6,578 (849)	7,062 (911)	7,627 (984)	8,154 (1053)	8,669 (1119)	9,122 (1177)	9,350 (1206)
경비원수 (배율)	41,146 (100)	133,946 (326)	291,320 (708)	321,721 (782)	342,357 (832)	358,415 (871)	377,140 (917)	392,624 (954)	401,011 (97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722 (1,254)	9,900 (1,277)	9,452 (1,220)	9,463 (1,221)	9,131 (1,178)	9,247 (1,193)	9,266 (1,196)	9,065 (1,169)	8,996 (1,161)
	406,109 (987)	422,851 (1,028)	446,703 (1,041)	453,004 (1,101)	459,305 (1,116)	474,922 (1,154)	481,794 (1,171)	491,082 (1,194)	494,110 (1,201)

자료 :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2. 경비업종의 구분

1) 한국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34개 법인 중 에서 검업을 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비율로 누계하였을 때, 전체 80%가 넘는 업체 와 인력이 시설경비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신변보호업체(12.3%)와 보 디가드인력(8.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편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 경비업체의 경우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55개업체(1.6%)에 6002명(4.4%)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표 2-3> 한국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업종별 현황

(단위 : 개/명)

구분	법인수	허가업종별 현황					
		업종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체	2,834	3,387 (100.0%)	2,726 (80.5%)	52 (1.5%)	416 (12.3%)	138 (4.1%)	55 (1.6%)
경비원		135,400 (100.0%)	109,590 (80.9%)	3,048 (2.3%)	11,760 (8.7%)	5,000 (3.7%)	6,002 (4.4%)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1)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eianki5/h19_keibi_gaikyo.pdf.

2) 일본

일본의 민간경비업체의 업종별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일반가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각종이벤트 등에 있어서의 혼잡경비, 현금·핵연료물질 등의 수송경비, 신변보호업무 등 폭넓은 분야에 미치고 있으며 이제 일본사회에서 민간경비산업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범예방활동에 힘입어 안전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다(日本 全國警備協會, 2007:10-14).

<표 2-4> 일본 민간경비업체의 업종별 현황

경비업자수		경비업자수	구 성 비 (중복포함)	경비업자수		경비업자수	구 성 비 (중복포함)
경비업무	경비업자수			경비업무	경비업자수		
총수		8,996	-	3호 업무			
1호 업무 ²⁾	상주	5,757	64.0%	3호 업무	귀중품운반	532	5.9%
	순회	1,168	13.0%		현금수송	459	5.1%
	공항보안	45	0.5%		현금수송외 귀중품운반	262	2.9%
	기계	787	8.7%		핵연료물질	9	0.1%
	주택대상	532	5.9%		기타	15	0.2%
	주택외 대상	676	7.5%		총계	627	7.0%
	총계	6,384	71.0%		4호 업무	긴급통보서비스	138
2호 업무	교통유도	5,429	60.3%	긴급통보외 서비스		239	2.7%
혼잡	2,601	28.9%	총계	435		4.8%	
총계		6,249	69.5%				

자료 :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3. 경비원의 결격사유

1) 한국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경비업법 §10)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고 있다.

①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일본경비업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제1호 경비업무로는 시설경비, 공항보안경비, 기계경비업무가 대표적이고, 제2호 경비업무로는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업무가 대표적이며, 제3호 경비업무로는 핵연료물질등위험물운반, 현금수송, 귀중품운반 등이 대표적이고, 제4호 경비업무로는 신변보호업무가 대표적이다(日本警備業法§2①).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경비업무의 중요도에 의해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15의2).

2) 일본

일본의 경우 경비원으로서 제한되는 자는

- ① 18세 미만자 또는 성년피후견인
- ②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이 법에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
- ④ 최근 5년간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하거나 경비업무에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을 위반한 자
- ⑤ 집단적이거나 상습적인 폭력적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⑥ 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법률 제77호, 1991) 제12조 혹은 제12조 6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법 제12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로서 해당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
- ⑦ 알코올, 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 중독자
- ⑧ 심신장애로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 규

칙에 규정된 자이다(日本 警備業法 §14).

또한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들은 경비원이 되기 위한 강습과정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경비원이 되려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 ①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 ②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록 삭제 후 그 삭제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③ 법인에서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 가운데 전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종합해보면 일본의 경비업법에서는 우리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 분석

1.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

1) 자격검정의 개요

일본 경비원 자격검정제도는 경비원의 교육 및 지도 감독, 지도교육책임자,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1982년 경비업법 개정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日本 全國警備業協會, 1993: 32-35).

일본 경비원의 검정제도는 경비원 개개인의 경비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검정제도만이 경비원의 경비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격자의 처우를 향상, 배려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비원들로 하여금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험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윤근, 2001 : 242-243).

일본 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는 경비원 교육 등에 의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검정하고, 경비원으로서 일정한 지식 등 능력유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경비원의 노력을 촉발하고, 경비업무에 더욱 적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업무의 중요성, 공공성 또는 수요의 과다를 감안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검정

규칙(규칙), 제1조에 정해진 공항보안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의 4종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각 종별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2급에 합격하고 나서 1년 이상 해당경비업무에 종사하면 1급 수험자격이 주어진다(日本 警察廳, 2007:128-129).

현재 일본 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는 공항보안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등 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의 업무검정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항보안경비업무검정(1급)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출제범위의 경우 총 7개영역 62개항목에서 100점 만점의 학과시험과 100점 만점의 실기시험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기시험의 항목에서는 금속탐지기·X선투시기·휴대금속탐지기(HMD)·폭발물 자동검사장치(EDS)·액체물 검사장치 등의 조작요령과 경계봉·방패·호신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와 응급구급법까지 포함하고 있다(조용철, 2007:147).

이러한 실기시험의 실시는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등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등도 마찬가지로여서 실기시험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2) 자격검정의 방법

일본 경비원의 자격검정방법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지정강습을 수료하고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수검하는 방법이 있다.³⁾

한편, 검정에 합격한 자는 해당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검정합격자임을 표시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표장은 경범죄법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 표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검정은 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직접 검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자격인 것에 한하여, 검정 신청자가 상당수(30명 정도) 전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정의 실시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수검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공안위원회의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회의 실시 시기 등도 고려하고 있다(日本 警備業法§23③).

일본 민간경비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시험실시를 위한 담당자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검정담당자, 검정시험원 및 검정보조원의 구분을 명시한 명찰 또는 완장 등을 장착시키고 있다.⁴⁾

3) 검정종별가운데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업무에 대하여 사단법인 전국경비협회가 행하는 특별강습을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강습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표 3-1>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시험 담당자의 구분

구분	업무	비고
검정담당자	학과 시험 및 실기 시험의 실시의 감독	경찰관
검정시험원	학과 시험 및 실기 시험의 채점	경찰관
검정보조원	검정시험원의 보조, 채점표의 집계, 수검자의 접수·안내·유도등의 보조 활동	구분없음

자료 : 日本 警備業法施行令, 日本 警備業法施行令檢定規則§6③

자격검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은 검정의 종별 및 급별마다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학과시험은 5지선다 20문의 필기시험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배점은 1문제당 5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과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하며 도중 퇴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기시험은 별도 송부하는 「실기시험 문제」 및 「채점표」를 통하여 실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검자 한 명에 대해 한 명의 검정시험원이 배치하여 사전에 지정된 채점방법에 의해 ‘점수감소식 채점법’으로 하여 채점표의 감점란에 배점된 점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이 때 실기시험의 도중에 있더라도 수검자가 합격기준에 이르는 성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중에 중지시키고 있다(日本 警備業法施行令檢定規則§6②및④).

합격 여부의 판정기준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90% 이상의 성적을 획득할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여부의 발표는 각각의 시험 종료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격자의 이름 및 수검번호를 발표할 뿐, 채점한 점수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자격검정의 현황

일본 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는 1986년 개시된 이래,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학과시험을 실시하는 방법과 (사)전국경비업협회 및 (재)공향보안사업센타가 실시하는 지정강습을 수료한 자에 대해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여 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⁵⁾ 2007년 말 기준으로 검정취득자수 누계는 다음과 같이, 1급검정 총 10,077명, 2급검정 총 86,022명으로 전경비원중 1급검정 취득자와 2급검정 취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 17.4%에 이른다.

4) 검정실기 시험원의 지정은 다음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日本 警備業法檢定規則§6③). ① 경찰청이 실시하는 경비업 담당자 양성 전과를 수료한 경찰공무원 ② 경찰청 생활안전기획과장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찰관.

5) 지정강습에서 1급강습제도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표 3-2>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공항	시설	혼잡	교통	핵연료 물질등	귀중품	계
1급검정취득자(누계)	1,936	2,102	3	3,755	67	2,214	10,077
2007년중	640	745	3	1,030	43	363	2,824
2급검정취득자(누계)	2,903	21,259	3,877	40,585	275	17,123	86,022
2007년중	1,111	6,594	2,286	15,747	84	5,559	31,381

자료 :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2008

2. 일본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

1) 교육훈련의 개요

일본의 경비산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큐리티서비스가 사회 곳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자격검정제도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일선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경비업자는 모든 영업소 및 해당 영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업무마다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계획에 근거해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규정한 것을 실시할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를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

그리고 일본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자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기간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로 선임된 자에게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6) 日本 警備業法§22② 공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때, 다만 해당 영업소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로 선임한 자가 결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간은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다.

1.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근거해 경비원 지도, 교육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2.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정에 의해 경비원 지도교육업무에 관하여 전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자.

실시하는 경비원지도교육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日本 警備業法§22⑧). 이는 경비원지도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정보와 실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강습

일본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강습은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라 ① 최근 5년간 해당 경비업무와 관련되는 경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인 사람 ② 경비원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⁷⁾ 제4조에 규정된 1급 검정과 관련되는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日本 警備業法§23④) ③ 검정규칙 제4조에 규정된 2급 검정과 관련되는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경비원으로서 해당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후 계속해 1년 이상 해당 경비업무의 구분과 관련되는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공안위원회가 전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⁸⁾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강습사항 및 시간은 다음과 같이 최소 34학점에서 최대 47학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강습 종료 후 수료고사를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3-3> 일본 민간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강습사항 및 시간

강습 사항	강습 시간
1.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1학점 ⁹⁾
2. 경비업법기타 경비업무의 실시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사항	10학점
3. 경비업무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학점
4.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제1호 경비업무 23학점 - 제2호 경비업무 14학점 - 제3호 경비업무 14학점 - 제4호 경비업무 10학점
5 기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로서 필요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학점

자료 :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관련되는강습등에관한규칙 §5

7) 국가공안위원회 규칙(2005) 제210호 이하 「검정규칙」 참조.
8) 일본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및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관련되는강습등에관한규칙 제3조 참조
9) 학점은 ‘시한(時限)’으로 표기되는데,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 경비업법에서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기간 - 3년에 1회씩 - 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로 선임된 자에게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지도교육에 관한 보수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日本 警備業法§22⑧).

<표 3-4> 일본 민간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보수강습사항 및 시간

강습 사항	강습 시간
1.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실시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법령에 관한 사항	1학점
2. 사건, 사고 등 발생 상황 기타 최신의 치안 정세에 관한 사항	1학점
3. 경비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신의 각종자기재의 기능,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학점
4. 경비업무와 관련되는 사고 사례의 전철을 밟는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1학점

자료 :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관련되는강습등에관한규칙 §9 (현임 지도교육책임자 강습) 참조

3)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자격자증 현황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2004년 개정 일본경비업법 시행에 의해,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데,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자격자증의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5>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현황

구 분	1호 경비업무	2호 경비업무	3호 경비업무	4호 경비업무
자격증 교부수(누계)	27,135	20,346	6,686	5,143
2007년중	17,372	13,643	4,745	4,276

자료 :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2008

최근에는 2004년 이전의 구(舊)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자격자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과조치기간 종료 후 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18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강습'을 수강한자를 현(現)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자격자증 소지자로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수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¹⁰⁾

10) 구(舊)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자격자증소지자의경과조치(일본 경찰청, 2007년 10월 25일)

IV.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의 시사점

1. 민간경비업무의 전문화

한국 민간경비산업과 비교해 볼 때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경비, 혼잡경비, 공항보안, 핵연료물질운반등 전문화된 민간경비업무 분야 구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민간경비산업 사회적 역량 및 시장규모라 하겠다.

우선 민간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2천8백여업체에 12만5천여명의 인력인데 비하여 일본은 9천여업체에 49만여명의 인력 등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연간 매출액도 3조5천억엔을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과의 비교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4-1> 일본 민간경비업체의 매출액 증가추이

(단위 : 엔)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3조2,222억	3조4,447억	3조5,469억	3조5,508억	3조5,634억
업체당 평균매출액 (배율)	3억5,289 (100)	3억7,252 (106)	3억8,278 (108)	3억9,170 (111)	4억3,541 (123)

자료 :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2008.

이와 함께 연간 시장규모 1조억엔을 상회하는 방법설비관련시장의 성장에 부응하여 양질의 방법설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법설비사를 교육 및 육성하는 제도가 (사)일본방법설비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 및 전문인력도 더욱 다양화 추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일본 경찰청, 2007 : 129).

또한 2005년까지 교부되지 않았던 핵연료물질운반등의 제3호 경비업무 1급 자격검정자가 2007년중 43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의 검정합격자가 배출됨에 따라, 호송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 민간경비산업이 일본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역량과 시장규모는 다시금 일본 민간경비산업을 전문화시키고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동력으로 활동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의 강화

우리 민간경비서비스 및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제도가 1996년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으로 1997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자나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정하여진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감독하는 자로서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을 강습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게 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여, 지도 및 기록 등을 유지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비업체의 교육실시 기록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하여 경비업자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순석·박재풍, 2005: 282).

현행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의 경우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에서 일부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4-2> 한국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 택 형	선 택 형 또는 단 답 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1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설계 중 택1

자료 : 경비업법시행령 §12 참조

<표 4-3> 한국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과정

구분(교육시간)	과 목(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3) 테러대응요령(3) 화재대처법(2) 응급처치법(3) 분사기사용법(2) 교육기법(2) 예절 및 인권교육(2) 체포 및 호신술(3) 입교식/평가/수료식(4)	
자격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2) 호송경비(2) 신변보호(2) 특수경비(2) 기계경비개론(3) 일반경비현장실습(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4)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4) 인력경비개론(3) 기계경비현장실습(5)
계	44시간	

자료 : 경비업법시행규칙 §9 참조

그러나 일본의 자격검정제도의 경우 자격시험단계에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비업무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경비원등의 검정의 운용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자격검정제도는 일본의 (사)전국경비협회에서 주도하는 각종 강습회의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가 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자격검정이 연계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조용철, 2007: 149).

3.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제도의 경우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교육의 실시 이후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날로 급변하는 시큐리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윤근·조용철, 2004:325).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경비 관련자격증도 경비업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을 통하여 기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병행되는 자격증제도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민간경비 관련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경비업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민간경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과 연계된 민간경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중 상설화시켜 교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및 관련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제도 역시 앞으로 각 경비영역에 따라 시설경비·기계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특수경비 전문자격증으로 세분화시키고, 이에 대한 실기시험을 병행함으로써 시큐리티전문자격증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검정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를 시큐리티 자격검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경비영역별 시험실시 기준 및 출제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지난 30여년간 양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역량강화 및 시장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시큐리티업계는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자격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 등을 통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시설경비, 혼잡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경비업무 분야를 다양화시키고 방법진단사와 같은 신규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미래 산업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시행하고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 중심으로한 경비인력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본사회에 비취지는 민간경비산업의 자질 및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도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병행되는 검정제도를 통하여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 외에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등위험물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혼잡경비, 신변보호 등 다양화된 전문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일본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사회로 전개되는 한국사회에서 민간경비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민간경비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민간경비 자격검정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을 구축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제도에 대한 관련법률 개정 및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각 경비영역별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평가항목의 개발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산업이 미래산업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7). 경찰백서.
- _____ (2006). 국회국정감사요청자료집.
- 김순석·박재풍(2005). “민간경비의 치안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5호)』.
- 이상원(2006).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 이창무(2003). “한국과 미국의 민간경비 성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3호)』.
- 이윤근(2001). 『민간경비원론』. 서울: 도서출판 엑스퍼트.
- 이윤근·조용철(2004). “미국 사회안전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 조용철(2007).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0호)』.
- 조병인 외(2004), 『OECD국가와 치안역량비교를 통한 21세기 경찰발전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rthur J. Bilek & Peter P. Lejins(1997).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 Clifford E. Siminsen(2006).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Hall.
- 日本 警備業法(2008).
- 日本 警備業法施行令(2008).
- 日本 警備業法施行令檢定規則(2008).
- 日本 警察廳(2007). 警察白書.
- 日本 全國警備業協會(1993). 警備員教育教本(基本教育篇).
- _____ (2007). Security Time.
- <http://www.asisonline.org/store/item.xml>.
- http://www.npa.go.jp/safetylife/seianki5/h19_keibi_gaikyo.pdf.

ABSTRACT

A Study on the License & Training System of Security Agent in Japan

Jo, Yong-Chul · Kim, Soon-Seok

This study discusses some topics of Security License System and Security Training System in Japan. Especially, the Security License must be very influence that th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And it's true that a few enlightened approach to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s already begun to take place in some divis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License Test System in Japan is the method of test rule and test section. Then the training systems of the security agent have been very impressive rule and the system for security agent.

Today, the market of th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ve been going to develop and extend to the future industry. The assignments that are leaved to security industry in Korea must b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License & Training System of Security Agent in Korea should be made effort by the security industry and the public section that looks like the police.

Key Words : Private security agent in Japan, Security education & training, License test system, Security operation, The security law